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1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변론 종결 2018. 3. 15.

판결 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V 답 15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78. 6. 20. 접수 제251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1988. 6. 20.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6. 8. W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8. 12. 30. X 명의로, 1979. 5. 25. Y 명의로 각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1984. 6.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20. '1978. 6.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자 Z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Z은 1990. 5. 22. 상속인으로 처인 AA, 아들인 피고 B(호주상속), 딸인 피고 C(동일 가적), 피고 D, E(출가녀)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또한 AA1)은 2007. 10. 31. 사망하였는데, 형제자매인 AB, AC, AD, AE이 망 AA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 AA에 대한 AB, AC, AD, AE의 상속분을 그 처와 자녀가 되는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해당란 기재 상속지분 별로 대습상속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인 망 Z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1978. 6. 16.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1988.6. 16.경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Z을 상속하거나 순차로 그의 상속인 망 AA을 대습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민경

[별지]

목록

망 Z의 상속인들

순번	성명	상속분
1	B	6/18
2	C	4/18
3	D	1/18
4	E	1/18
5	AA	6/18

망 AA의 상속인들

순번	성명	상속분
1	AB	7/72
2	AC	7/72
3	AD	7/72
4	AE	7/72

망 AB의 상속인들

순번	성명	상속분
1	F(처)	18/936
2	G(자)	12/936
3	H(자)	12/936
4	I(자)	12/936
5	J(자)	12/936
6	K(자)	12/936

망 AC의 상속인들

순번	성명	상속분
1	L(자)	39/936
2	M(자)	39/936

망 AD의 상속인들

순번	성명	상속분
1	N(자)	39/936
2	O(자)	39/936

망 AA의 상속인들

순번	성명	상속분
1	P(처)	18/936
2	Q(자)	12/936
3	R(자)	12/936
4	S(자)	12/936
5	T(자)	12/936
6	U(자)	12/936

1) AA의 사망 당시 민법 제1000조 제1항 1, 2호에 의한 1, 2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망Z과 혼인한 후 자녀를 낳지 않았다).

2) 피고 Q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위 등기 후 3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태를 지배하는 상대방에게 그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과는 달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등에 따른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위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어떠한 항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Q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